

[계룡시가족센터 예산총칙]

제1조 2023년 계룡시가족센터 세입·세출 예산총액은 금949,931천원(금구억사천구백구십삼만일천원)으로 한다.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 명세는 “세입·세출 예산” 과 같다.

가. 세입	949,931천원
- 사업수입	3,450천원
- 보조금수입	882,551천원
- 전입금	5,000천원
- 후원금	30,000천원
- 전년도이월금	28,466천원
- 잡수입	464천원
나. 세출	949,931천원
- 사무비	335,176천원
- 재산조정비	500천원
- 사업비	584,575천원
- 잡지출	164천원
- 예비비 및 기타	29,516천원

제3조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을 준수하며 그 목적은 본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있다.

제4조 세입예산은 해당 관, 항, 목의 예산을 초과하여 이를 수납할 수 있으며, 내역에 명시되지 않은 수입은 기타 수입으로 수입 조치한다.

제5조 세출예산 중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예산회계규정에 의거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

제6조 본 예산을 집행하는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변동이 필요한 경우의 추가경정예산은 운영 위원회에 그 의결권이 있다.